

학회지편집위원회운영규정

제 정: 2019.02.15.(이사회승인)
최근개정: 2025.01.20.(이사회승인)

제1조 (목적) 본 규정은 학회 정관 제42조에 의거하여 학회지(철도저널) 편집위원회(이하 "위원회"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 위원회는 편집위원장(Editor-in-Chief) 1인과 간사를 포함한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. 편집위원은 모두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, 편집위원 가운데 간사를 정한다.

제3조 (임기)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 (임무)

- ① 본 위원회는 학회지의 발간에 관한 기획의 수립, 원고의 투고, 접수 및 심사, 편집 및 출판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.
- ② 학회지는 매년 2월, 4월, 6월, 8월, 10월, 12월 격월간으로 연 6회 정기발행을 원칙으로 한다. 정기발행 횟수 등의 변경시에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위원회는 제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행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5조 (원고료 지급) 학회지(철도저널)에 투고하는 원고에 대하여 붙임 1에서 정한바에 따라 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 (회의)

-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나누되, 정기회의는 정기 학술대회 기간에 개최할 수 있고 임시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. 회의의 의장은 편집위원장이 맡는다.
- ② 위원은 출석을 위임할 수 있으나 위임할 경우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.
- ③ 회의 안건은 재적수의 과반수 출석(위임장 포함)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 직무대행은 해당 위원회의 간사가 맡는다.

제7조 (기타사항) 본 규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들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
제8조 (개정) 본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로 발의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.

부칙 (2019.2.15.)

1.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9.8.19.)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9.8.19.)

제1조 (개정일) 이 규정의 개정일은 2019년 8월 19일(이사회 승인) 이다.

제2조 (시행일) 위 개정일(2019.8.19.)에도 불구하고, 이 규정은 2019년 3월 18일자 이사회에서 의결된 정관의 개정(안)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(2019.9.6)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22.8.25.)

제1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25.1.20.)

제1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1]

학회지(철도저널) 원고료 기준

<단위: 원>

구분	금액(페이지)	비고
권두언	30,000	최대 30만원
특집원고	30,000	최대 30만원
기술기사, 기획연재, 기술동향	20,000	최대 20만원

※ 現학회장의 권두언에 대해서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음.

※ 단, 저자가 원고료 수령을 거부할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.